



제1693호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3 4 4 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및 의견수렴 청 소 행 정 과 2
- 공 고 제 1 3 5 3 호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세 무 과 10
- 공 고 제 1 3 5 4 호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세 무 과 18
- 공 고 제 1 3 5 5 호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및 의견수렴 세 무 과 27
- 공 고 제 1 3 5 9 호 무단방치차량(사망말소자)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48
- 공 고 제 1 3 6 1 호 무단방치차량(해산간주법인)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50
- 보 건 소 공 고 제 7 1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 품 위 생 과 52
- 보 건 소 공 고 제 7 2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 품 위 생 과 54

고 시

- 고 시 제 6 8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56
- 고 시 제 6 9 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만수5동 청사 신축공사)사업 실시계획 고시(정정) 도 시 재 생 과 59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344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14일

남동구청장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22. 1. 10.)에 따라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규격을 조정하여 수집운반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폐기물 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 법령 사항 정비
- 종량제 봉투 규격 조정
- 종량제 봉투 규격 조정에 따른 무게 상한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라.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청소행정과
 - 연 락 처 : 전화 453-2554 FAX 453-2559

4. 참고사항

-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22. 1. 10.)에 따라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규격을 조정하여 수집운반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폐기물 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임 법령 사항 정비 : (안 제1조)
- 종량제 봉투 규격 조정 : (안 별표 5)
- 종량제 봉투 규격 조정에 따른 무게 상한 정비 : (안 제9조제3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22. 1. 10.)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을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와 같은 조례”를 “시
행령 및 같은 법”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사업계폐기물, 불연성생활폐기물”을
“가정사업계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
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75리터 : 19킬로그램 이하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공급된
100리터 공공용 봉투, 60·125리터 가정사업계폐기물 봉투 및 50리터
불연성폐기물 마대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과 무게 상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종량제 봉투의 규격 · 용도 및 연도별 가격(제14조제6항 관련)

단위(원)

구분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1월 1일부터	용도
5 ℓ	210	230	일반용 봉투
10 ℓ	390	440	일반용 봉투
10 ℓ	390	440	재사용 봉투
20 ℓ	750	870	일반용 봉투
20 ℓ	750	870	재사용 봉투
50 ℓ (13kg)	1,850	2,170	일반용 봉투
30 ℓ	2,350	2,350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
50 ℓ (13kg)	3,920	3,920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
75 ℓ (19kg)	4,730	4,730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
20 ℓ	2,200	2,200	불연성 폐기물 마대
50 ℓ (13kg)			공공용 봉투
75 ℓ (19kg)			공공용 봉투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 ----- ----- ----- ---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 ② (생략) ③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가정사업계폐기물, 불연성생활폐기물 포함)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되며, 종량제 봉투별 무게 상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1. (생략) 2. 60리터 : 15킬로그램 이하 3. 100리터 : 25킬로그램 이하 4. 125리터 : 32킬로그램 이하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가 정사업계폐기물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75리터 : 19킬로그램 이하 <삭 제> <삭 제>

[참고자료]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환경부, 2022. 01. 10.)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봉투 종류·재질·규격 등에 관한 사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며, 이외에 처리방법에 따라 매립용(불연성), 소각용(가연성) 봉투로도 구분·제작 가능
 - 일반용 봉투 용량: 1L, 2L, 3L, 5L, 10L, 20L, 30L, 50L, 75L
 - 재사용 종량제봉투: 3L, 5L, 10L, 20L, 30L
 - 공공용 봉투 용량: 30L, 50L, 75L
 -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 용량: 3L, 5L

다.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방법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최대한 대형폐기물로 분류하여 수거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자치단체에서 제작·판매하는 별도의 전용 PP포대, 마대 등에 담아 배출
 - ※ 20L 규격 이하로 제작, 1인 10장 이상 판매 제한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353호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18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2022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감면 적용시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조항에 대하여 해당 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3조, 제5조, 제6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세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1층 세무과 (만수동, 남동구청)
- 연락처: ☎ 453-2361, FAX 453-23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 입법 예고)

4. 개정조례(안): 별첨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조례
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감면 적용시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조항에 대하여
해당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3조, 제5
조,
6조의2)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의2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u>2022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 ----- ----- ----- ----- <u>-- 2024년 12월 31일</u> ----- ---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u>2022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 ----- ----- ----- ----- ----- ----- ----- ----- ----- ----- ----- <u>2024년 12월 31일</u> -----.
제6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	제6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

2024

년 12월 31일

[참고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감면,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 ⑧ (생략)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202-1354호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18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방세징수법」의 인용 조문 정비함(안 제3조)
 - “법 제71조의2제1항” → “법 제103조의3제1항”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인용 조문 정비함(안 제11조)
 - “규칙 제52조의3” → “규칙 제73조의8”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세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1층 세무과 (만수동, 남동구청)
- 연락처: ☎ 453-2361, FAX 453-23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개정조례(안): 별첨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세징수법」의 인용 조문 정비함(안 제3조)
 - “법 제71조의2제1항” → “법 제103조의3제1항”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인용 조문 정비함(안 제11조)
 - “규칙 제52조의3” → “규칙 제73조의8”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법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규칙 제52조의3”을 “규칙 제73조의8”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u>법제71조의2제1항</u>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구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 ----- ----- 법제103조의3제1항----- ----- ----- ----- ----- ----- -----.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u>법제71조의2제1항</u>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1. ----- ----- 법제103조의3제1항-----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u>규칙 제52조의3</u> 에 따른 수수료	제11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 ----- ----- ----- ----- ----- <u>규칙 제73조의8</u> -----

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2. 3. 18.>

수수료(제73조의8 관련)

1. 매각 수수료

매각 수수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공매진행단계별 수수료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최저 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구 분	기 준 금 액	공 매 진 행 단 계	수 수 료 율	최 저 수 수 료
가. 법 제85조제1항 또는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납부세액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 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 납부 전	1.2%	24만원
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채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 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 납부 전	1.2%	24만원
다.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해당 매각금액	—	3.0%	30만원
라.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매수대금	—	1.2%	24만원

비고:

1.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2. 동일한 채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를 중 가장 높은 수수료를 적용한다.
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되거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보전 수수료

보전수수료는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355호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18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등 개정(2022.1.28.)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손처분”의 사유를 성격별로 구분하여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구분함(안 제13조~제16조, 안 별지 제1호~제5호, 제9호~제10호)
- 「지방세징수법시행령」의 인용 조문 정비함(안 제21조, 별지 제11호, 제13호)
 - “영 제74조의2제5항” → “영 제91조의11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세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1층 세무과 (만수동, 남동구청)
- 연락처: ☎ 453-2361, FAX 453-23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 입법예고)

4. 일부개정규칙(안): 별첨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등 개정(2022.1.28.)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결손처분”의 사유를 성격별로 구분하여 “정리보류”와 “시효 완성정리”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구분함(안 제13조~제16조, 안 별지 제1호~제5호, 제9호~제10호)
- 「지방세징수법시행령」의 인용 조문 정비함(안 제21조, 별지 제11호, 제13호)
 - “영 제74조의2제5항” → “영 제91조의11제5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1조의11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정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은**”을 “**정리보류 등은**”으로, “**결손결정결의서**”를 “**정리보류 등 결정결의서**”로, “**결손처분표**”를 “**정리보류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를 “(**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정리보류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한**”을 “**정리보류를 한**”으로, “**결손처분을 취소**”를 “**정리보류를 취소**”로 한다.

제21조 중 “**영 제74조의2제5항**”을 “**영 제91조의11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 제9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 및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 통지 제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도) 구(구)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2호서식]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부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주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수납구분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부과금액	감액	정당세액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 제5호서식]

징수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9호서식(을)]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 민 (법 인) 등 록 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정리보류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인) 남동구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1호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	------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 제1호 및 「남동구 구세 징수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

■ [별지 제13호서식]

남 동 구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의11제5항(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채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채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채납처분비				
합계				

끝.

남 동 구 청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구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생략)	제13조(구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현행과 같음)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세 채납액은 <u>결손처리</u> 하고 제 1항의 채납액 정리부를 작성하 지 아니한다.	② ----- ----- <u>시효완성정리</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u>결손처분</u>) 법 제106조에 따른 <u>결손처분</u> 은 별지 제1호서 식의 <u>결손결정결의서</u> 및 별지 제9호서식의 <u>결손처분표</u> (갑, 을)에 따른다.	제14조(<u>정리보류 등</u>) ----- --- <u>정리보류 등</u> 은 ----- --- <u>정리보류 등 결정결의서</u> - ----- <u>정리보류표</u> ----- -----.
제15조(<u>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u>) 해당 연 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u>결손처 분</u> 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 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u>결손 처분 취소액</u> 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 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채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u>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u>) ----- ----- <u>정리보 류를</u> ----- ----- <u>정리 보류 취소액</u> ----- ----- -----.
제16조(<u>결손처분의 사후관리</u>) <u>결 손처분</u> 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	제16조(<u>정리보류의 사후관리</u>) <u>정 리보류</u> 을 한 ----- ----- -----

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21조(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압류재산
 의 인계·인수서에 따른다. (본
 조 신설 2018. 12. 28.)

정리보류를 취소-----
 -----.

제21조(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91조의11제5항 -----

[참고자료]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2022. 1. 28.>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제목개정 2022. 1. 28.]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28.]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359호

무단방치차량(사망말소자)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등기)송달하여야 하나, 사망말소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사망말소자)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2.7.18. ~ 2022.8.2.
3. 공고대상 : 경 기 93루 5422
4.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폐차장에 견인되어 있는 자동차를 자진회수 및 폐차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불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매각) 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86조의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자진처리 이행:20~30만원, 자진처리 불이행: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처분에 불응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사망말소자)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취인명	주 소
1	2022-00138	경기93루5422	포터초장축더블캡	남촌동로16번길33-7 노상주차장	박상영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409번길 311-11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361호

무단방치차량(해산간주법인)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등기)송달하여야 하나, 해산간주법인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해산간주법인)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2.7.18.~2022.8.2.(15일)

3. 대 상 차 량: 86로1137

4. 공 고 내 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내 자진처리 및 이동을 하시기 바라며, 불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26법,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견인 후 강제처리(폐차,매각) 될 수 있습니다.

나. 강제견인 예고를 송달받지 못한 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해산간주법인)차량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취인명	주 소	견인일
1	2022-00141	86로1137	그랜드 스타렉스	남동서로 316번길 67 노상주차장	㈜한소닉에이스 (해산간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엠1904호(송도동,송도테크노파크아이티센터)	2022.6.29.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2-71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22. 7. 14. ~ 2022. 7. 28. (15일간)
3. 당 사 자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휴게음식점	2020-0202098	카페407	이**	인주대로676번길 18, 동아아파트상가 2층 203호(구월동)	-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 유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남동구보건소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032-453-2622)
- 청문일시 : 2022. 8. 8.(월)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재자: 보건행정과 의약관리담당

8.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식품허가팀 032-453-26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2-72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2. 7. 29.
3.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7. 14. ~ 2022. 7. 28.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휴 게 음식점	2016 -0200213	시즌아이PC방 (인천만수점)	김**	인천 남동구 구월로 320, 2층(만수동, 웰빙프라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2-05-09	2022-07-29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2. 7. 28.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
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2

2022년 7월 14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6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5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13-5 (구월동)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41번길 10-18 (간석동)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7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61-5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서 로28번길13-5 (구월동)	2009.11.16	문화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2.7.1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문화서로28번길 13-5 기초구간에위치하여13-5를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41번길 10-18 (간석동)	2022.7.15.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41번길 10-16 (간석동)	2022.7.15.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53번길 36 (간석동)	2022.7.15.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37-1 (간석동)	2022.7.15.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6번길 72 (장수동)	2022.7.15.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22번길 15 (간석동)	2022.7.15.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 50 (간석동)	2022.7.15.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인터넷모텔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69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만수5동 청사 신축공사)사업 실시계획 고시(정정)

남동구 고시 제2022-43(2022.07.14.)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만수5동 청사 신축공사)사업에 대하여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재무과 ☎032-453-2812, 도시재생과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년 7월 19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76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당초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칭: 간석5동 복합청사 신축

○정정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칭: 만수5동 복합청사 신축

3. 사업규모

- 대지면적: 1,157㎡
- 연 면 적: 2,975.71㎡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재무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1	만수동	876	대	1,157	1,157	남동구청	-	
합 계				1,157	1,157			